

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[별표 2]

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

(제11조제3항 관련)

종 전 별 정 직 공 무 원	4 급 상 당	5 급 상 당	6 급 상 당	7 급 상 당	8 급 상 당	9 급 상 당
일 반 직 공 무 원	4 급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